

춘천지방법원 2021. 12. 15 선고 2020나5510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

담당변호사 김선희

피고, 항소인 1. E

2. F

3. H

4. I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

담당변호사 최유덕

변 론 종 결 2021. 12. 9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5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. 10. 16. 선고 2018가단301526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.

원고들에게,

가.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, 57, 58, 59,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차’ 부분 27.1㎡ 지상의 경량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,

나.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5, 54, 10, 52, 51,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카’ 부분 35.2㎡ 및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, 3, 4, 5, 6, 7, 8, 9, 10,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나’ 부분 25㎡ 각 지상의 흙벽돌 세멘와지붕 주택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5, 54, 10, 52, 51,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카’ 부분 35.2㎡ 및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, 3, 4, 5, 6, 7, 8, 9, 10,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나’ 부분 25㎡를 인도하고, 2018. 9. 23.부터 위 건물을 철거하고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각 월 23,7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피고 H은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, 23, 22, 21, 20, 19, 18, 17, 16, 15, 14, 13, 12, 11, 8, 7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라’ 부분 85㎡ 지상 벽돌 기와지붕 건물 및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, 25, 26, 27, 28, 29, 30,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마’ 부분 24㎡ 지상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을 각 철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, 23, 22, 21, 20, 19, 18, 17, 16, 15, 14, 13, 12, 11, 8, 7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라’ 부분 85㎡ 및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, 25, 26, 27, 28, 29, 30,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마’ 부분 24㎡를 인도하고, 2019. 1. 1.부터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각 월 38,8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라.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, 41, 42,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바’ 부분 169㎡ 조립식 건물 및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3, 44, 45,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아’ 부분 5㎡ 지상 컨테이너를 각 철거하라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주문 제3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(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 이 유

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 기재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 2. 변경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 제5쪽 17줄부터 2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피고 E과 피고 I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혹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각 소유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7쪽 5줄부터 1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피고 E, 피고 I이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각 1/5 지분으로 공유하고, 이 사건 토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며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 E, 피고 I은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부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로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서 각 점유 부분 지상의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.

## 3. 결론

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, 피고들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 한편,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

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.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송종선, 판사 조미연, 판사 김현정